



재해 개요

- 2020. 07. 05.(일) 08:50경 ○○ 생태하천복원사업 토목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차집관로 (레진관, D1200, 약1.8톤)의 높낮이 조절을 위해 들어 올리던 중 강널말뚝과 차집관로 사이에 있던 재해자(만43세, 보통인부)가 차집관로에 가슴 부위를 맞아 당일 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 사망함.



재해 발생 원인

- 굴착기의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미준수
 - 사업주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중량물인 차집관로 양중·들어올리기 등의 작업을 하여야하나, 굴착기를 사용함
-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신호방법 미준수
 - 사업주는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약 1.8톤의 중량물인 차집관로를 양중·들어올리기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여야 하나 미준수함
- 작업계획서 미작성
 - 사업주는 중량물인 차집관로 양중·들어올리기 등의 작업 시 협착 등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 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미작성함



재해 예방 대책

-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준수
 -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에 적합한 양중기를 사용하여야 함
-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신호방법 지정 및 준수
 -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시 신호방법을 정하고, 운전자가 이를 준수하게 조치하여 함
- 작업계획서 작성
 - 사업주는 중량물인 차집관로 작업시 협착 등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함
 - ※ 차집관로 측면 되메우기 근로자는 양중 범위 밖에서 대기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함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